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6호

2019. 6. 20.

건명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사업소)		
제안 및 제출자	논 산 시 장	제안연월일	2019. 6. 13.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연월일	2019. 6. 13.

보 고 내 용

□ 제안이유

-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논산시 체육센터 이용료 할인 대상자 중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2019년 7월 1일부터 사용하지 않는 용어의 개정 필요
-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 방법 변경에 따라 조문 수정 및 [별지 제3호 서식] 삭제(안 제9조 제3항)
- 나.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체육센터 이용료 할인 대상자 관련 조문 수정(안 제12조 제2항 제2호)
- 다.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대시설 사용료 일부와 상업 사용료를 삭제(안 별표 1)

라.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는 자격증 명칭인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를 각각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로 변경하고, 현행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에 맞게 지도강사 위촉 자격 기준을 수정(안 별표 2)

□ 검토의견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용어 및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6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